

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 경위

- 가. 발 의 자 : 송재형 의원
- 나. 의안번호 : 제915호
- 다. 발의일자 : 2015. 11. 26.
- 라. 회부일자 : 2015. 12. 28.

2. 제안 사유

-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재정비하고, 근거 법령인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가.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를 재정의함.(안 제2조제14호)
- 나. 조례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함.(안 제17조제2항)

4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
제2조제1호, 제2호
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붙임
비용추계 비대상

5. 검토 보고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(이하 “신재생에너지법”이라 함)」에 따른 용어 정의와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“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”의 제출기한을 조례에 반영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.
- 다만,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각각 정의하고 있으나, 개정조례안에서는 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”로 통합하여 정의하고 있어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도 이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관 계 법 령
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3.23., 2013.7.30., 2014.1.21.>

1. "신에너지"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·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수소에너지

나. 연료전지

다. 석탄을 액화·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(重質殘渣油)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

라. 그 밖에 석유·석탄·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

2. "재생에너지"란 햇빛·물·지열(地熱)·강수(降水)·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태양에너지

나. 풍력

다. 수력

라. 해양에너지

마. 지열에너지

바.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

사.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

아. 그 밖에 석유·석탄·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

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

제28조(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)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와 제27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중앙행정기관등"이라 한다)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2.27.>

1.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
2.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
3.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
4.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
5.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